

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한 선 미 의원)

의안 번호	24-15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: 2024. 2. .

발의자: 한선미, 고병준, 권영숙, 권인순,
안미자, 장정희, 차해영, 채우진

1. 개정이유

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, 부식비 지원을 명문화하여 중식을 제공하려는 경로당의 부담을 경감시키고, 어르신들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부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5조제1항제2호)

3. 관계법령

가. 노인복지법 제4조, 제47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4. 2. 14. ~ 2. 20.

나. 의견제출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양곡”을 “양곡 및 부식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보조금의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<u>양곡</u></p> <p>3. ~ 7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5조(보조금의 지원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양곡 및 부식비</u></p> <p>3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【관 계 법 령】

노인복지법

[시행 2023. 12. 14.] [법률 제19449호, 2023. 6. 13., 일부개정]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7조(비용의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제5조제1항,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경로당 1개소당 월 부식비 200,000원 산정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연도 구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세입	소계(a)				
세출	○부식비	379,200	379,200	379,200	379,200	379,200	1,896,000
	소계(b)	379,200	379,200	379,200	379,200	379,200	1,896,000
□총비용(a-b)		-379,200	-379,200	-379,200	-379,200	-379,200	-1,896,0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 의존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재원	소계	-	-	-	-	-
자체 수입	소계	379,200	379,200	379,200	379,200	379,200	1,896,000	
	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	379,200	379,200	379,200	379,200	379,200	1,896,000	
지방채		-	-	-	-	-	-	
민간자본		-	-	-	-	-	-	
기타		-	-	-	-	-	-	
합계		379,200	379,200	379,200	379,200	379,200	1,896,000	

5. 덧붙이는 의견

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김해인
연락처	02-3153-8865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200,000원(서울시 5개구 부식 지원비 평균액) × 158개소 × 12개월